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-21호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50호(통관우체국 관할지역 고시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
2015년 3월 2일

우정사업본부장

통관우체국 관할지역 고시 폐지

○ 폐지이유

통관우체국 고시는 관세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고시를 폐지합니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